

# 해외건설협회 - 대한상사중재원 업무협약서

대한상사중재원과 해외건설협회는 상호 상생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 제1조(목적)

본 협약은 대한상사중재원(이하 '중재원'이라 함)과 해외건설협회(이하 '협회'라 함)가 해외건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·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공고히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(기본원칙)

양 기관은 상호 업무협력을 이행함에 있어 호혜적인 기반위에서 교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.

## 제3조(중재원의 업무협조)

- ① 중재원은 협회의 회원사 등 건설·엔지니어링사에 대하여 중재, 조정, 알선, 상담 등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관련 분쟁이 신속히 처리 되도록 적극 협조한다.
- ② 중재원은 분쟁예방강좌, 세미나, 홍보 등을 통해 협회의 회원사 등 건설·엔지니어링사의 분쟁 예방에 적극 협조한다.
- ③ 중재원은 협회의 회원사 등 건설·엔지니어링사의 해외건설 시장 진출 관련 분쟁 정보 수집 및 발간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협조한다.

## 제4조(해외건설협회의 업무협조)

- ① 협회는 회원사가 중재원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등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.
- ② 협회는 회원사에 대한 교육, 홍보 등의 활동 중에 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안내하는 등 협력사의 중재제도 활용을 홍보하는데 적극 협력한다.
- ③ 협회는 홍보, 장소, 인원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재교육, 세미나 및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.

## 제5조(공동업무의 추진)

- ①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본 약정과 관련한 설명회, 세미나의 개최,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.

- ② 양 기관은 공동업무 또는 이 약정에서 정한 업무를 행할 경우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상호 제공하며, 제반비용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.

#### 제6조(정보교환)

- ① 양 기관은 업무협조를 원활히 하고, 상호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간행물과 자료를 교환하는 등 필요한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환한다.
- ② 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상호 보유한 자료,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,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한다.

#### 제7조(실무협의)

양 기관은 본 약정의 구체적인 운영과 기타 본 약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실무협의를 거치고, 필요시에는 관련 업무에 관한 상호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한다.

#### 제8조(변경 및 해지)

본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합의하여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. 또한 본 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상대방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본 협약 해지는 서면 통보로 한다.

#### 제9조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상호협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

#### 제10조(효력)

본 협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, 합의하에 개정 또는 폐지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.

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8월 22일

해 외 건 설 협 회  
회 장 이 건 기

대 한 상 사 증 재 원  
원 장 이 호 원

이 건 기

이 호 원